



## 韓國獸醫學 發達史 日本植民地時代의 獸醫學과 獸醫制度 II

이 시 영 | 경마평론가

### 라. 輸出牛檢疫法

수출우검역법은 1909년(융희 3년) 7월 10일 법률 제21호로 공포되었다.

“朕이 輸出牛檢疫法을 裁可하야茲에 頒布케  
하노라 御名 御璽 隆熙 3년 7월 10일 內閣總理  
大臣 李完用 農商工部大臣 權重應” 명의이다.

**제1조** 日本에 輸出하는 畜牛는 本法에 依하여  
獸疫의 檢疫을 行함.

**제2조** 本法에서 獸疫이라 함은 牛疫 炭疽 流  
行性鵝口瘡을 稱하며 獸疫에 걸렸거나 그 疑  
心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輸出牛는 檢疫을 하기 為하여 9일간 輸  
出檢疫所에 繫留하여야 한다.

**제4조** 檢疫官吏는 檢疫中 病牛를 發見하였을  
때는 鎮錮 隔離 或은 撲殺 其他 必要한 處置를  
行하여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檢疫官吏는 그 獸疫傳  
染病의 憂慮가 있는 場所에 繫留한 地域의 輸  
出牛에 對해서는 제3조의 繫留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제5조** 檢疫中의 畜牛 및 그 屍體 病毒에 汚染

되었거나 그 疑心이 있는 物品은 檢疫官吏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他處에 移動을 할 수 없다.

**제6조** 檢疫官吏는 病牛의 屍體 및 病毒에 汚  
染하거나 或은 그 疑心이 있는 物品을 燒棄하  
거나 或은 消毒하여야 한다.

**제7조** 檢疫官吏는 檢疫을 마치고 病牛가 아닌  
것으로 認定될 때는 그 牛體의 一部에 烙印하  
고 檢疫請求人에게 證明書를 交付한다.

**제8조** 前條의 畜牛로서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  
여 證明書 交付後 卽時 船舶에 搭載하지 못한  
자는 그 事由가 消滅할 때까지 輸出牛檢疫所  
에 繫留하여야 한다.

**제9조** 檢疫官吏는 輸出牛를 搭載한 船舶의 船  
長에 對하여 船舶內의 消毒을 命하고 其他 必  
要한 指揮를 命하여야 한다.

**제10조** 輸出牛를 搭載한 船舶은 日本海港에  
直航하여야 한다.

전항 日本海港은 農商工部大臣이 이를 告示한다.

**제11조** 左의 境遇에 있어서는 檢疫官吏는 제7조  
의 證明書를 取消하고 그 畜牛를 相當期間 輸  
出牛檢疫所에 繫留하고 檢疫을 行하여야 한다.

1. 前條의 船舶이 3日以內에 出港하지 아니할 때

2. 出港前 病牛를 發見하였을 때

**제12조** 제10조의 船舶이 海難에 依한 境遇以外에 他 海港에 寄港할 때는 제7조의 證明書는 效力を 貽失한다.

**제13조** 輸出牛檢疫所에 繫留한 輸出牛의 飼養管理 및 搭載는 農商工部大臣이 指定한 者가 아니면 이를 行할 수 없다. 前項에 依하여 指定한 者가 檢疫請求人에게 받을 飼養管理 및 搭載料金은 農商工部大臣의 認可를 받아 이를 定한다.

附則 本法은 隆熙 3년 8월 20일부터 施行한다.

이규정에 의하여 수출우검역소 관제(官制)가 칙령제 65호로 7월 10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전문 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장은 검역관으로 하고 검역관보 4명 서기 1명 총 6명으로 구성” 되도록 하였다. 제7조에서 “수출 우검역소의 위치는 농상공부대신이 차를 정함” 이라 했다. 이 규정에 의하여 1909년(융희 3년) 8월 12일자로 농상공부 고시 제 27호로 “수출 우검역소를 경상남도 東來府 龍珠面 牛巖洞에 치함. 농상공부대신 권중응”이라고 고시를 내려 이곳에 우리 나라 최초로 수출우검역소가 문을 열게된다. 그후 수출우검역소는 부산이외 원산 성진 인천 등지로 확대된다.

동년 8월 19일에는 수출우검역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제1조에 단서를 가하였다. “但 食料에 供할 者로 日本海港에 到達한 後 日本當該官廳의 指揮를 받아 卽時 屠殺하는 者는 此限에 不在함”이라고 해서 일본에 도착한 후 즉시 도살대상자는 검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

동년 8월 20일에는 농상공부훈령 병 제15호로서 수출우검역집무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는 검역절차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1조에는 검역관이 신청인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다. 제2조는 계류 중 이상이 발견될 시 취할 조치이며 제3조는 합격된 소에 대해 뿐에 S자를 낙인하고 검역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의 명의로 내린 농상공부훈령 갑 제10호는 한성부윤과 각도관찰사를 대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畜牛는 我國의 重要한 物產으로 海外輸出額이 頗多하여 이중 日本으로 輸出하는 數는 每年 增加하는 趨勢인바 日本에서는 韓國 清國 시베리아에서 畜牛를 輸入할 때는 獸疫의 病毒을 가져 올 危險이 있다하여 그 輸入禁止를 主張하는 者가 있음에 萬一 하루아침에 日本에서 韓國牛의 輸入을 禁止하게 되는 境遇에 我國의 輸出貿易上에 一大損害를 끼치게 된다. 이에 日本政府와 協議한 바 韓國에서 輸出牛에 完全한 檢疫을 實施하면 그 輸入을 拒否하지 않을 뿐 아니라 日本에서 檢疫期間도 亦是 短縮하기로 決定하였음으로 我國 政府는 釜山港에 輸出牛檢疫所를 設置하여 本年 7月 法律第 21號로 輸出牛檢疫法을 頒布하여 本年 8월 27일부터 日本에 輸出하는 畜牛의 檢疫을 施行하기로 하고 日本에서는 本年 9월 1일 以後로 清國 韓國 시베리아에서 오거나 또는 이들 나라를 經由하는 生牛의 輸入을 停止하기로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하였으나 우리 政府가 行한 檢疫證明書를 가진 畜牛와 食用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소는 日本에서 檢疫을 받은 後 卽時 檢疫官이 指定한 屠場에서 屠殺하는 畜牛는 輸入을 許可하기로 하였으니 只今 以後 本國에서 日本에 畜牛를 輸出할 때는 前記 食用할 것 以外는 모두가 輸出牛檢疫法에 依하여 不可不 檢疫을 받아야 할 것이다. 同法에 依하여 檢疫을 받은 畜牛는 韓國에서 9日間 繫留하고 또한 日本에서 檢疫하기 為하여 다시 9日間 日字를 消費하되 從前 日本에서 舉行하던 檢疫日數 20日에 比하면 2日이 短縮되므로 營業者의 便利를 圖謀하게 될 것으로 믿으나, 要는 輸出牛檢疫所의 目的 은 本國 畜牛의 輸出을 嘉勵하고 國富의 增進 을 圖謀함에 있는지라 이에 訓令하니 이 趣旨 를 管下 一般人民에게 周知시켜 誤解가 없도록 할 것.

農商工部大臣 權重應”

수출우검역법이라는 자체를 통감부에서 만든 것이다. 단지 순종황제 명의로 반포한 것에 불과하기에 모든 것은 일본의 뜻에 맞추어진 것이다. 일본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소의 수입을 함에 있어서 전염병독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우검역법을 만들었는데 아마 일반인들이 이에 불복하는 조짐이 있었는가 보다. 종전의 일본에서의 20일간 검역을 단지 2일 단축했다는 것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업자들에 대한 생색에 불과하다.

서문에서 잠간 언급하였지만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으로부터 침입하는 각종 전염병의 방어벽으로 최대한 이용하는 최초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부산 수출우검역소는 한반도의 소를 수탈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으며 한편에는 우역혈청소라는 새로운 수의기관과 기술의 상륙을 예고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후 한일합방이 있은 후 이출우검역소(移出牛檢疫所)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몇 차례의 관제개정이 있었다. 일본국내에서는 한우를 선호하였으며 일부지방에서는 한우 키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한우는 일본우에 비해서 육질이 좋고 사역에도 적당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우를 선호하므로 이출우검역소는 항상 만월이었다. 그래서 1917년에는 950두의 우사를 350두 증설해서 1300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그러나 부산 한곳으로 수출하기는 너무나 양이 많았기에 검역소를 증설하기 이른다. 즉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 진남포 원산 성진으로 확장한다. 1943년에는 수출하는 소의 검역뿐 아니라 수입되는 소의 결핵병까지도 검역하게 하였으며 검역소의 직원도 대폭 증가하였다. 獸醫官이 전임 3명이고, 속 전임 3인 獸醫官補가 전임 14인으로 늘어났다.

## 마. 牛疫血清製造所

한반도에서의 우역 예방은 곧 일본에서의 우역 방역의 차원에서 가장 급선무였기에 한국과 중국국경에 인공적인 면역대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우역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일본국내에 우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부산에 우역혈청소소를 건립하게 되는데 이에 가장 큰 공로자는 望月

瀧三(망월룡삼)수의사였다.

1908년(명치 41년) 한국의 원산항을 떠난 일군의 한우중에서 우역이 발생하였다. 하관(下關) 검역소에서 이를 체크하지 못했고 이를 소가 기부현(岐阜)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역이 발생되었다. 이에 망월 선생은 이 우역의 출처를 조사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판명하였다. 이때 농상무성 내에서는 한반도로 부터의 소의 수입을 금지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선생은 현행 검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보다 먼저 중의원에는 청국 한국 시베리아로부터의 소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있었다. 이 때 한국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산업경제상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였다. 이에 선생은 이 법안의 목적 이 우역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한국측과 협의를 하였다.

선생은 검역소의 검진이 정확하다면 우역의 침입은 절대로 막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한국의 수출항에 검역소의 설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국측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였고 일본과 한국은 이 의견에 합의하였다. 1909년(융희 3년) 3월 29일이었다.

1910년(명치 43년) 3월에서 4월에 일본에서는 동경을 중심으로 우역이 유행했을 때 혈청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망월선생은 정부에다 일본의 경우는 바다로 둘러 쌓였기에 대륙에서 우역이 들어오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한반도와 중국 국경 지역에 인공 면역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모두가 동의하여 수역조사소와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기로 하였는데 선생은 이를 위해서 한반도에 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침 당시 조선총독은 우역면역혈청이 모자라서 긴급히 면역혈청을 요구하던 때라 한국의 소가 수출되는 가장 큰 항구인 부산에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정부가 그처럼 우역혈청제조소를 설립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은 바로 한반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반도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상재지(常在地)로서 그중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질병이 우역이었다. 우역을 종식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소를 기르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과 같을 정도였다. 한반도에서 우역을 종식하지 않고 일본국내에서 우역의 방역을 한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었다. 우역혈청제조소가 설립되기 이전의 한반도에서의 우역발생상황은 방역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911년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11월에 완공을 하였다. 이름하여 농상무성 우역혈청제조소이다. 초대 소장은 이를 추진하였던 망월선생이었다.

1911년에 제정된 우역혈청제조소의 관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칙령 제 103호 명치 44년(1911년) 4월 10일

우역혈청제조소관제

제1조 牛疫血清製造所는 農商務大臣의 管理에 屬하며 左의 事務를 管掌한다.

1. 牛疫血清의 製造 및 그의 試驗에 관한 사항
2. 牛疫血清의 配布 및 賣渡에 관한 사항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제2조** 우역혈청제조소에는 좌의 직원을 둔다.

所長

技士 專任 1인

技手 專任 3인

書記 專任 1인

前項 定員外 5인 以內의 無給技手를 둘수 있다.

**제3조** 소장은 기사로 충당하고 농상무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한다.

**제4조** 技士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기술을 관장한다.

**제5조** 技手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기술에 종사한다.

**제6조** 서기는 판임으로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혈청소는 일본정부 농상무성의 직속관청이었으나 한반도에 있기에 조선총독부와 협력 관계 없이는 모든 업무가 어려웠다. 조선총독부로서는 한반도에 우역의 종식이 목적인 이 사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결과로 이곳에서는 우역의 면역혈청을 충분히 생산하여 중국국경지역과 인접한 수 백리에 걸쳐 인공 면역지대를 설치하고 한반도전체에 우역 면역 접종을 실시함으로서 한반도에서 우역의 종식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 영내에 우역의 침입을 막는 방어벽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혈청소 설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1918년 3월에 이르러 농상무성은 우역혈청제

조소를 칙령 제 31호로서 조선총독부에 이관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종전의 우역혈청만을 생산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의 면역혈청의 생산하고 또한 가축질병의 조사연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수역혈청제조소라고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다. 이는 1914년도에 조선총독 寺內正毅가 부하들을 이끌고 우역혈청제조소를 방문 후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관에게 명하기를 부산 이출우검역소를 포함하여 우역혈청제조소의 조직을 연구제조기관으로 기사 15인 내외를 배치할 것을 농상무성과 협의하게 하였다. 또한 농상무성에 속한 것을 조선총독부에 이관할 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견들이 많았다. 특히 이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망월선생같은 분은 자기가 만든 기관이 이제 문을 닫는다는 심정에서 이 논의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수역혈청제조소라는 간판을 바꾼 후에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이 제안한 후 4년 후에 결실을 맺어 수역혈청제조소라는 간판을 바꾸어 달게 되었으나 조선총독이 희망하던 기사 15인과 수출 우검역소와의 통합은 미치지 못하였다. 직원의 정원은 소장 서기까지 총 9인으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다시 1942년 조선총독부 가축위생 연구소로 개칭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총독 寺內正毅가 바라던 검역소와 연구소의 통합은 9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루어져 수의과학검역원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바. 獸疫血清製造所

칙령 제31호로 우역혈청제조소는 그 이름이 수역으로 바뀌게 된다. 그의 관제는 다음과 같다.

**제1조** 朝鮮總督府 獸疫血清製造所는 朝鮮總督의 管理에 屬하며 左의 事務를 管掌한다.

1. 家畜傳染病의 豫防接種液 및 血清의 製造와 試驗에 關한 事項

2. 家畜傳染病의 調査 및 研究에 關한 事項.

3. 痘苗의 製造 및 試驗에 關한 事項.

4. 家畜傳染病의 豫防接種液 및 血清 痘苗와 其他 副產物의 配付 및 販賣에 關한 事項.

**제2조** 獸疫血清製造所에는 左의 職員을 둔다.  
所長

技士 專任 2인 秦任

書記와 技手 專任 7인 判任

**제3조** 所長은 技士로 充當하며 朝鮮總督의 指揮監督을 받아 所務를 管掌한다.

**제4조** 技士는 上官의 命을 받아 技術을 管掌한다.

**제5조** 書記는 上官의 指揮를 받아 庶務에 從事한다.

**제6조** 技手는 上官의 指揮를 받아 技術에 從事한다.

부칙 본령은 19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牛疫血清制造所 官制는 廢止한다.

本令 施行時 現在 牛疫血清製造所 技士 技手 또는 書記의 職에 있는 者는 別途의 辭令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고 各 朝鮮總督府獸疫血清製造所 技士 技手 書記의 同官等 奉給에 任命한다.

수역혈청제조소는 1942년에 들어와서 다시 그

이름이 바뀌게 된다. 칙령 제485호로서 1942년 5월 6일부로 조선총독부 가축위생연구소 관제가 반포된다. 일본은 이제 전쟁의 말기에 접어들므로 모든 것을 비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해에 들어와서 일본은 서두르는 감이 역력하였다. 2월에는 과거의 경마협회(競馬協會)를 해산하고 조선마사회(朝鮮馬事會)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마사에 관한 조사연구나 말의 위생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들이 모두가 같은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말은 조선마사회가 관장하고 그 외 가축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관장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그 이름도 바꾸고 체제도 전환하였을 것이다. 또한 수역이라는 용어대신 가축위생이라고 하면 보다 포괄적인 용어이면서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시의에 맞는 용어였을 것이다.

## 바 家畜衛生研究所

칙령 제485호(1942년 5월 6일)朝鮮總督府 家畜衛生研究所官制

**제1조** 朝鮮總督府家畜衛生研究所는 朝鮮總督의 管理에 屬하며 左의 事務를 管掌한다.

1. 家畜衛生에 關한 調査 및 試驗

2. 家畜疾病의 豫防 및 治療 其他 家畜衛生에 關한 研究

3. 家畜疾病의 豫防劑 및 治療劑의 製造 및 配付

4. 家畜疾病의 豫防劑 및 治療劑의 檢定 및 病性의 鑑定

5. 痘苗의 研究 製造 및 配付

6. 家畜衛生에 關한 講習 및 講話

**제2조** 家畜衛生研究所에는 左의 職員을 둔다.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所長

技士 專任 7인 秦任

屬 專任 3인 判任

技手 專任 15인 判任

3조이하 생략.

1942년(소화 17년) 8월 28일 조선총독부 가축위생 연구소 사무분장규정이 제정 공포된다.

**제1조** 朝鮮總督府家畜衛生研究所에 廉務課 研究部 製造部를 둔다.

**제2조** 廉務課에서는 左의 事務를 管掌한다

1. 文書의 接受, 發送, 編纂 및 保存에 關한 事項
2. 人事에 關한 事項.
3. 會計에 關한 事項.
4. 官印의 管守에 關한 事項.
5. 統計 및 報告에 關한 事項.
6. 所內 取締에 關한 事項.
7. 製品의 配付 및 拂下에 關한 事項.
8. 他部의 管掌에 屬하지 않는 事項

**제3조** 研究部에서는 左의 事務를 管掌한다.

1. 家畜衛生의 調査 및 試驗에 關한 事項.
2. 家畜疾病의豫防 및 治療 其他 家畜衛生의 研究에 關한 事項.
3. 痘苗의 研究에 關한 事項.
4. 家畜疾病의 病性鑑定에 關한 事項.
5. 講習 및 講話에 關한 事項.

**제4조** 製造部에서는 左의 事務를 管掌한다.

1. 家畜疾病의豫防劑 및 治療劑의 製造와 檢定에 關한 事項.
2. 痘苗의 製造에 關한 事項.

이상의 3개 과정 즉 우역혈청제조소 수역혈청

제조소 가축위생연구소의 직제를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그 업무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우역혈청제조소 시절에는 단순히 우역의 면역혈청 생산만이 본 업무였으며 부수적으로 우역의 예방업무가 전부였다. 그러나 수역혈청 제조소 시절에는 가축의 모든 전염병이 해당되었는데 주로 법정 전염병이 해당되었으며 면역혈청의 생산과 백신생산이 주 업무였다. 그러나 가축위생연구소 시절에는 용어자체도 수역이나 우역대신 가축위생, 가축질병으로 바뀌었으며, 연구와 조사 및 시험이 우선이었으며, 면역혈청의 생산뿐 아니라 치료제의 생산이 추가되었으며 한편 의약품의 검정기능과 병성감정, 일반인이나 수의사에 대한 계도기능이 생기기도 하였다. 특히 인체용 두묘(種痘)를 이곳에서 생산하였다. 아마 소를 이용해서 제조한다고 해서 가축위생연구소의 업무영역이 되었는가 보다.

3개 기관을 통 털어서 가장 오랫동안 소장직을 맡았던 사람은 우역혈청제조소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던 망월선생이었다. 1911년 4월부터 1931년 12월까지 무려 21년의 세월을 일본의 가축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방어벽을 치는데 이바지했으며 아울러 그 결과 한국 수의계를 위해서 일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시절의 수의 행정체계는 방역업무를 비롯하여 도축검사등과 같은 것은 경찰이나 현병에서 수행하였으나 단지 수역혈청제조소와 종양장 종마목장과 같은 중앙기관은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이를 볼 때 일본은 한반도를 병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지어 우역의 발생상황까지도 모두 체크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가축질병이나 혹은 도살장의 위생상태를 제대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강제적인 힘이 작용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일본 본토에서는 이들 업무를 농상무성에서 수행하였는데 비해서 한반도에 와서는 경찰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을 않다. 가축방역업무를 경찰이 수행하였기에 그들이 꿈꾸는 한반도를 경유한 가축전염병의 일본 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1941년경에 들어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가운데 그들은 종래 지방자체단체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조선총독부 중앙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도 수의업무만은 오히려 경찰에서 농무부서로 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41년에 개정된 조선총독부 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어 수의사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사항이 농무과에 신설된다. 도축검사업무는 후생과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과거 경찰이 하던 수의업무는 완전히 경찰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만치 자신을 가졌던 것 같다.

1941년 11월 19일 개정된 조선총독부 사무분장규정  
발췌

제8조의 2 제4항 5항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식  
산국 농무과 소관사항)

1. 家畜傳染病에 關한 事項
6. 獸醫師 및 家畜衛生에 關한 事項.
7. 種馬牧場, 種羊場, 種牡羊育成所, 獸疫血清製造所 및 移出牛檢疫所에 關한 事項

제12조 厚生局에 保健課 衛生課 社會課 勞務  
課를 둔다.

保健課에서는 左의 事務를 管掌한다.

6. 屠場 屠畜 食肉 및 牛乳에 關한 事項

다음 해인 1942년 6월 1일자로 수역혈청제조소는 가축위생연구소로 그 명칭이 개정되었고, 1942년 11월 1일자로 후생국 보건과 소관사항 중 “6항 屠場 屠畜 飲食物 有害物等에 關한 事項”으로 개정되고 “10항 其他 保健衛生에 關한 事項”이 신설되었다. 축산물위생문제를 가지고 자주 보건사회부와 농림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